

의안번호	2108657
의 퇴 인	강득구의원
회 답 일	2021. 2.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이하 “부서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분과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부서 내 괴롭힘에 따른 고충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 민간위원 수 증가 또는 심사방식 변경에 따른 고충심사를 위한 회의 및 안전검토 수당 증가분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49조제1항¹⁾은 부서 내 괴롭힘에 대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²⁾³⁾에

-
- 1)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⑧ (생략)
 - 2)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제정권자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 교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교육전문직의 고충을 심사함
 - 3)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생략)
 -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회의 시 5~7명의 위원이 고충심사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분과위원회 위원 수 또는 민간 위원 수가 이보다 증가할 경우 인원 증가에 따른 회의 및 안전검토 비용 증액분이 추가재정소요임
- 또는 심사방식이 변경되어 연간 회의 횟수, 회의 및 안전검토비용 단가 등이 증가하는 경우 심사방식 변경에 따른 회의 및 안전검토 비용 증액분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수 및 심사방식과 다르게 운영될 것인지 현 시점에서 불분명함

- 대통령령으로 분과위원회 위원 수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안전별 위원 수와 동일하게 정하고,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현행과 같은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분과위원회의 심사방식이 현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같은 경우 연간 회의 횟수, 회의 및 안전검토비용 단가 등이 동일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4)에 따르면 보통고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구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고충

⑥ ~ ⑧ (생략)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충심사위원회는 전체 위원(7~15명) 중 일부 위원(5~7명)을 지정하여 회의하도록 함

- 또한 최근 3년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교원 고충심사 청구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2018~2020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교원 고충심사 청구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8월말)	총합
직장내 괴롭힘 관련	12	5	5	22
기 타	24	48	15	87
합 계	36	53	20	109

주: 직장 내 괴롭힘 심사 청구는 학교장 부당업무지시, 동료에 의한 교권침해,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에 관한 건을 합산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박나경
연 락 처	02-6788-4627
	nkpark@assembly.go.kr
